# 55. 용접공에서 발생한 중심성 장액성 맥락 망막병증 및 연령과 관련된 비삼출성 황반변성

성별	남성	나이	만 63세	직종	용접공	직업관련성	높음

## 1 개요

근로자 ○○○는 1957년생으로, □사업장을 포함한 여러 회사에서 1995년 10월부터 2020년 10월까지 용접 및 용접 보조 업무를 약 24년간 수행하였고, □사업장에서는 약 21년간 근무하였다. 업무 수행 시 시력감소 및 눈에 이물감 증상 호소하여 2020년 6월 결막출혈로 로컬의원에서 수진하였고 이후 이물, 각막염 및 각막결막염, 기타맥락망막염증, 녹내장 등으로 수진하였다. 한편, 2021년 5월 안경을 맞추다 우안 시력이 나쁜 것을 발견하고 만 63세가 되던 2021년 5월 대학병원에서 중심성 장액성 맥락망막병증(central serous chorioretinopathy), 연령과관련된 비삼출성 황반변성(age-related macular degeneration)을 진단받았다. 근로자는 약 24년 동안 용접과 용접 보조 업무를 수행하면서 과도한 광선에 노출되었고 보호구 착용이 이루어지지 못해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을 하였고 근로복지공단은 2022년 1월 4일 산업안전보건연구원에 업무관련성 확인을 위한 역학조사를 의뢰하였다.

## 2 작업환경

근로자 ○○○는 1995년부터 2020년까지 용접 및 제관업무를 수행하였다. 근로자는 약 24년간 용접 및 용접 보조 업무를 수행하였고, □사업장에서만 약 21년간 근무하였다. 그 외 1985년 4월부터 1991년 8월 사이 약 6년 4개월간 현재는 폐업하였지만 근로자수 약 40-50명인 사업장에서 빙초산, 양잿물, 염료 등을 이용한 염색 업무를 2교대 및 3교대로 수행하였다. 1995년에는 각기 다른 사업장에서 각각 1개월, 5개월간 그라인딩 업무를 수행하기도 하였다. 근로자는 1995년부터 증상이 발병한 2020년까지 약 24년간 용접 및 간접용접 보조 업무, 그라인딩 업무를 수행하였다. 용접관련 자격증 없이 주간근무로 업무를 수행하였고 약 2015년까지는 월, 화, 목, 금은 밤 10시, 수, 토는 오후 5시경 퇴근하였으며, 그 뒤로는 월, 화, 목, 금은 오후 8시, 수, 토는 오후 5시경에 마쳤다고 하였다.

#### 3 해부학적 분류

- 안질환

## 4 유해인자

- 물리적 요인

## 5 의학적 소견

근로자 ○○○는 업무수행 시 시력감소 및 눈에 이물감 증상 호소하여 2020년 6월 결막출혈로 로컬의원에서 수진하였고 이후 이물, 각막염 및 각막결막염, 기타맥락망막염증, 녹내장등으로 수진하였다. 한편, 2021년 5월 안경을 맞추다 우안 시력이 나쁜 것을 발견하고 만63세가 되던 2021년 5월 대학병원에서 중심성 장액성 맥락망막병증(central serous chorioretinopathy), 연령과 관련된 비삼출성 황반변성(age-related macular degeneration)을 진단받았다. 안과검진에서 우안 최대 교정시력 0.2, 좌안 최대 교정시력 0.9, 굴절검사 상 우안 3.5sph, 좌안 3.25sph 소견으로 기록되어있다. 근로자는 현재에도 우안의 시력은 호전이나 악화를 보이지 않고 있지 않으며 왼쪽 시야는 정상이나 오른쪽 시야는 굴곡지게 보인다고 호소하고 있다. 근로자의 의무기록과 건강보험수진내역에서 고혈압 및 당뇨 과거력이 없었고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의 수진내역이 없음을 확인하였다. 근로자는 B형간염 보균자였다. 가족 중 고혈압, 당뇨병, 황반변성이나 망막 관련 질환을 앓은 사람은 없다고 진술하였다. 흡연력은 고등학교 때부터 현재까지 하루 1/4갑씩 45년간 흡연하였으며(11.25 PY), 술은 마시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운동은 걷기, 등산, 헬스 등을 하며 축구와 같은 운동은 잘 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2022년 건강진단에서 당뇨의증으로 추가 검진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진술하였다.

## 6 고찰 및 결론

근로자 ○○○(남, 1957년생)는 63세가 되던 2021년 5월에 중심성 장액성 맥락망막병증, 연령과 관련된 비삼출성 황반변성을 진단받았다. 근로자는 □사업장을 포함한 여러 회사에서 약 24년간 용접 및 용접 보조 업무를 수행하였다. 근로자의 질병과 관련 있는 작업환경 요인으로 햇빛, 용접, 레이저광 등이 있으며, 일부 연구에서는 용접광 노출 후의 망막장애에 대한 보고가 있다. 근로자는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은 채로 용접 보조업무를 수행하였으며, 과거 연구에 근거할 때 용접광에 보호구 없이 노출됨으로 인해 빛에 의한 망막장애가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추정한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는 근로자의 상병은 업무관련성에 대한 과학적 근거가 상당한 것으로 판단한다. 끝.